

E-20(2) 상용직 근로자 관리

1. 고 용

(1) 고용절차

상용근로자 채용시 ‘현장 상용근로자(임시원)고용승인신청서’, 자필이력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고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, 고용승인을 통보 받은 후, ‘현장 상용근로자 채용보고서’를 작성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서 사본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채용보고한다.

(2) 직종

상용근로자의 분야별직종은 다음과 같다.

① 사무직

경리 · 자재 · 노무 · 서무 · 전산 · 중기관리보조직등

② 기술직

토목 · 건축 · 전기 · 기계 · 설비 · 안전 · 측량 · 화학류관리 · 시험기사보조직등

③ 기능직

십장,전공,중기운전,B.P.운전,제도공,원동공(보일러, 양수),위험물 취급,전공등

④ 기타직

창고관리,숙소관리,식당관리,경비,검수등

(3) 고용시 구비서류

① 근로계약서 1부.

② 자필이력서 1부.

③ 주민등록등본 1부.

④ 신체검사서 1부.

⑤ 자격증 및 면허증사본 1부.

⑥ 고용사유서 1부.

⑦ 신원보증서류 1부.(경리 · 자재 · 노무보조 등에 한한다.)

(4) 고용제한

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상용근로자로 고용하여서는 안된다.

- 전염병의 질병,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
- 금치산자,한정치산자,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심신장애자
-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자
- 기타 건설공사 현장에 부적합한 자

- ② 상용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부여하여서는 안된다.
- 각 업무분야의 주업무
 - 회사의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
 - 회사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행하는 업무
 - 현장소장의 지시에 따라 특별히 부여된 업무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.

(5) 근로계약서 작성

(6) 증명서 발급

상용직근로자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증명서의 사용용도를 명기하여 현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본사로 발급요청을 한다.

- 재직(경력)등 제증명발급 신청서

2. 취업규칙

(1) 취업규칙의 작성신고

- ①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현장소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(지방노동관서장)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.
- ②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의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③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별첨 서식에 의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
- ④ ①항에서 상시 근로자라 함은 직영근로자만을 의미한다.

(2) 취업규칙의 내용

- 1) 취업규칙의 작성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① 시업, 종업의 시각, 휴게시간, 휴일, 휴가와 취업교체에 관한 사항
 - ② 임금의 결정, 계산과 지급방법, 임금의 마감, 지급시기와 승급에 관한 사항
 - ③ 퇴직에 관한 사항
 - ④ 퇴직금과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
 - ⑤ 근로자의 식비, 작업용품 등 부담에 관한 사항
 - 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
 - ⑦ 업무상과 업무외의 재해 부조에 관한 사항
 - ⑧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

- ⑨ 기타 당해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
- 2) 해당 현장소장은 취업규칙 작성시 별도의 '취업규칙'을 참조하여 현장실정에 적합하게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,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기 전에 본사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.

3. 해고 및 퇴직

(1) 해고

- 1) 현장소장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해고할 수 있다.
- ① 정기 또는 수시검진결과 취업부적격자로 판정되었을 때
 - ② 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
 - ③ 도박 및 풍기문제로 직장규율을 문란케 하였을 때
 - ④ 폭행, 파괴, 태업을 선동하는 등 불미한 행동을 했을 때
 - ⑤ 취업기간중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
 - ⑥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한 때
 - ⑦ 정당한 이유없이 월3회 이상 결근 했을 때
 - ⑧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
 - ⑨ 퇴직하지 아니하고 타사업장에 이종취업한 때
 - ⑩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사고를 초래하여 인명손상 및 회사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
 - ⑪ 기타 근로자 귀책사유로 근로계약의 이행이 불가능 할 때
- 2) 상기의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자인서를 징수 받은 후 해고 처리한다.

(2) 해고의 예고

상용직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(3) 퇴직

- ① 근로자의 개인사정에 의하여 근로계약기간 종료 전에 당해근로자가 현장을 이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현장소장은 사직원을 징구하여 퇴직처리를 한다.
- ② 공사전부 또는 부분준공으로 계속취업이 불가능할 때에는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

로 보아 퇴직처리를 한다.

③ ②항의 종업 예고는 30일 이전에 현장계시로 대시할 수 있다.

(4) 퇴직결과의 보고

현장소장은 근로자의 해고 또는 퇴직 즉시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사에 보고하여야 한다.

- ① 현장 상용근로자 퇴직보고서
- ② 사직원 사본(퇴직시)
- ③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· 이직확인서 신고서 사본
- ④ 의료보험증(해당자에 한함)
- ⑤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사본 : 해당자에 한함
- ⑥ 근로자 귀책사유에 대한 자인서 사본(징계 해고시에 한함)
- ⑦ 해고예고통지서 사본(해당자에 한함)